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25 선고 2022가단32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30338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25 선고 2022가단32565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휘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3. 1. 25.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10. 2. 접수 제44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과 사이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증거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9년 증서 제100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9년 증서 제383호 공정증서(갑 제3호증)
채권자	원고	원고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 G, H)	C, H	C, H
차용일	2019. 2. 26.	2019. 5. 13.	2019. 5. 21.
차용액	2억 원	1억 원	2억 원
변제기	2019. 6. 26.	2019. 7. 30.	2019. 8. 31.
이율	공정증서상 연 24% (실제 이율 연 48%, 월 800만 원)	연 36% (월 300만 원)	공정증서상 이율 기재 없음 (실제 이율 연 48%, 월 800만 원)

나. C은 2019. 10. 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449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이 2019. 10. 1.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원리금 채무액은 총 515,483,756원[= ① 2019. 2. 26.자 소비대차계약상 원리금 채무액 203,013,683원 + ② 2019. 5. 13.자 소비대차계약상 원리금 채무액 103,209,166원 + ③ 2019. 5. 21.자 소비대차계약상 원리금 채무액 209,260,907원]이었고, 그 당시 C은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1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C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C에게 적절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그 이전 및 이후에도 피고는 C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때는 2019. 5.경이고, 매매대금은 2019. 5. 10. 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 2019. 5. 28.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 2019. 7. 3.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피고가 각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J 및 K 명의의 각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5,000만 원씩을 송금한 이유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경위에 근거한 C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J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의 송금 경위 :

C은 2019. 8. 5. J으로부터 주식회사 L 소유의 보통주식 12,500주를 1주당 10,000 원의 가액으로 양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자신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양수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함.

○ K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의 송금 경위 :

C은 2019. 5. 21. H, M과 함께 유한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N가 시행하던 서귀포시 O 소재 건설사업권을 4억 5,200만 원에 양수하는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C, H, M은 각자 1억 5,000만 원씩의 양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N가 C 등에 대하여 위 건설사업 분양대행자인 K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K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함.

②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경위 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0. 2. 이전에 이미 매도인인 C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C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관하여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미리 전부 이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때가 2019. 5.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만일 피고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위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19. 10. 1. 이전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또한 기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이 아닌 1억 5,8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10. 1. 이전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9. 10.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604,184,160원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의 2019. 10. 1. 당시 시가는 201,394,720원(= 604,184,160원 ÷ 3)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결국 C은 피고에게 그 당시 시가보다 약 4,000만 원 넘게 저렴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이 그 당시 위와 같이 시가와 차이가 상당히 큰 액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C, P와 함께 임대수익을 얻어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까지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C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부동산의 목록

1. 구미시 Q

잡종지 164평

2. 구미시 Q

위 지상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업소 96㎡

1층 화장실 3.78㎡

3. 구미시 R

잡종지 1,576㎡

4. 구미시 R

위 지상

조립식판넬조 단층 공장

1층 공장 314.88㎡, 끝.

